



2018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

2021. 7.



충청남도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1.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은 1년 동안(2018년) 각 시·군별로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의 총생산액을 추계한 자료임
2. 지역내총생산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으로 각 시·군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3.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을 당해 시군의 추계인구로 나눈 지표이므로 시·군별 소득 및 생활환경 수준 등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함
4.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 추계 시 이용되는 자료와 일부 상이하나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도 총생산 규모를 일치시켰음
5. 추계 기초자료 이용 시 시·군별 기초자료를 이용하나, 시·군별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초자료의 특성을 가능한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율 배분함
6.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7. 통계표상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또는 의미 없음
9.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는 충청남도청 데이터정책관(☎041-635-3206)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2018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 ◇ 시군별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시군별 생산규모를 추계함

I 추계 개요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일반통계 제213007호, 2007.12.14.)
- 작성기관 : 충청남도
- 추계대상 : 2018년도 기준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기준년도 2015년)

※ 지역내총생산(GRDP) : 어떤 지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 추계방법 : 국민계정체계¹⁾(SNA)에 따라 16개 경제활동별 통계자료를 수집·재가공하여 시군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생산측면에서 추계

< 16개 경제활동부문(한국표준산업 대분류) >

- ① 농림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매·소매업
- ⑦ 운수업 ⑧ 숙박·음식점업 ⑨ 정보·통신업 ⑩ 금융보험업 ⑪ 부동산·임대업 ⑫ 사업서비스업
- ⑬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⑭ 교육서비스업 ⑮ 보건·사회복지사업 ⑯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결과활용 : 지역 경제정책의 수립·평가,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1) 국민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 및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한 회계기준 및 체계로 유엔(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 통계 작성 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영문표기)

II

2018년 충남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 지역내총생산 규모 : 115조 5,342억원

- 충남은 전국 총생산(1,903조)의 6.1%를 차지, 전년 대비 235억원 감소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36,866천원) 보다 1.4배 높은 수준

<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1인당 GRDP >

구 분	2018	2017	2016
명목 지역내총생산	115.53조	115.56조	106.87조
1인당 지역내총생산	5,301만원	5,366만원	5,026만원

□ 경제성장률 : 0.6%

- 충남의 경제성장률은 0.6%로 전년(5.4%) 대비 낮은 성장세 기록
 -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도내 제조업의 성장 둔화('17년 9.2% → '18년 2.1%)
 - 고층아파트 등 건설 수주 감소 및 전력거래량 감소로 인한 건설업 (-13.6%), 전기·가스업(-5.6%) 부진 영향

< 경제성장률 >

구 분	2018	2017	2016
실질 지역내총생산	110.87조	110.17조	104.50조
경제성장률	0.6%	5.4%	3.2%

□ 산업구조

- 전국 산업구조에 비해 광·제조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업의 비중은 높고 건설업,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음

< 산업구조 >

구분	광·제조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충남 산업구조	54.3%	4.0%	3.5%	5.7%	32.5%
(산업 성장률)	(2.1%)	(-1.0%)	(-5.6%)	(-13.6%)	(2.7%)
전국 산업구조	29.2%	1.9%	1.4%	5.9%	61.6%

Ⅲ

2018년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① 지역내총생산 규모(명목)

□ 2018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아산시가 30.2조원으로 가장 크고, 청양군이 1.2조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 상·하위 지역 간 규모 격차는 최대 25.2배로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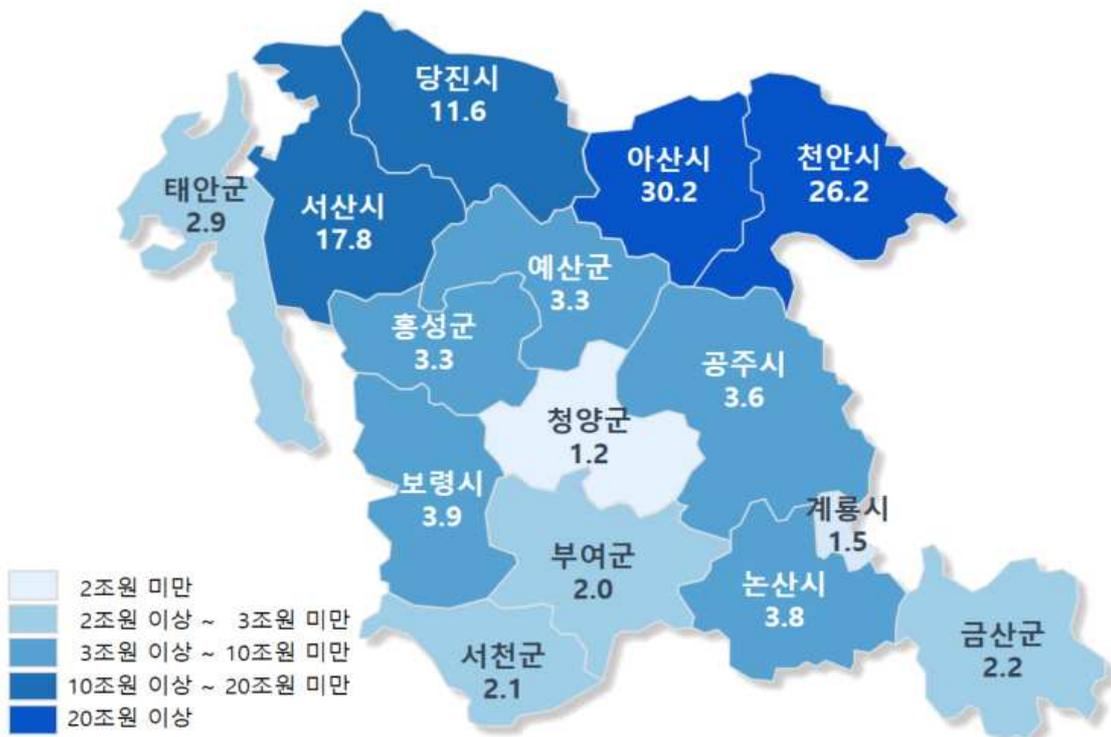
- 상위 : 아산시(30.2조), 천안시(26.2조), 서산시(17.8조), 당진시(11.6조)

- 하위 : 청양군(1.2조), 계룡시(1.5조), 부여군(2.0조), 서천군(2.1조)

○ 제조업이 발전한 북부권*은 충남 총생산 규모의 74.3%를 차지

* 북부권 : 아산시(30.2조), 천안시(26.2조), 당진시(11.6조), 서산시(17.8조)

<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지도(명목) >



□ 2017년 대비 2018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보령시, 청양군, 아산시, 태안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전년 대비 증가

- 증가(11개) : 천안시(1,563억), 서산시(1,557억), 당진시(1,512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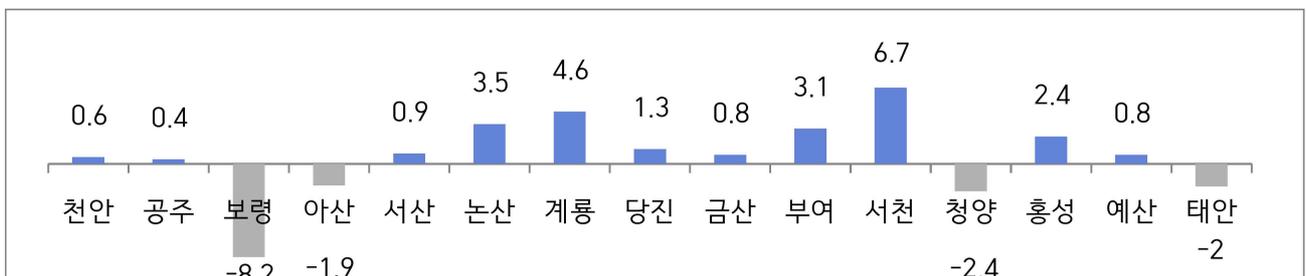
- 감소(4개) : 아산시(△5,699억), 보령시(△3,478억), 태안군(△589억) 등

< 시군별 지역내총생산(명목) 및 전년대비 증감률(그림) >

(단위: 10억원, %, %p)

구분	지역내총생산(명목)			비중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충청남도	115,557.7	115,534.2	-23.5	100.0	100.0	-
북부권*	85,914.7	85,794.7	-120.0	74.3	74.3	0.0
북부권 이외	29,643.0	29,739.5	96.5	25.7	25.7	0.0
천안시	26,008.9	26,165.2	156.3	22.5	22.6	0.1
공주시	3,613.4	3,628.2	14.8	3.1	3.1	0.0
보령시	4,248.9	3,901.1	-347.8	3.7	3.4	-0.3
아산시	30,788.6	30,218.7	-569.9	26.6	26.2	-0.4
서산시	17,637.7	17,793.4	155.7	15.3	15.4	0.1
논산시	3,662.3	3,790.5	128.2	3.2	3.3	0.1
계룡시	1,467.2	1,534.2	67.0	1.3	1.3	0.0
당진시	11,479.5	11,630.7	151.2	9.9	10.1	0.2
금산군	2,159.2	2,176.3	17.1	1.9	1.9	0.0
부여군	1,948.2	2,008.3	60.1	1.7	1.7	0.0
서천군	1,961.1	2,093.4	132.3	1.7	1.8	0.1
청양군	1,220.6	1,191.4	-29.2	1.1	1.0	-0.1
홍성군	3,195.3	3,270.4	75.1	2.8	2.8	0.0
예산군	3,229.8	3,254.3	24.5	2.8	2.8	0.0
태안군	2,937.0	2,878.1	-58.9	2.5	2.5	0.0

* 북부권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② 경제성장률(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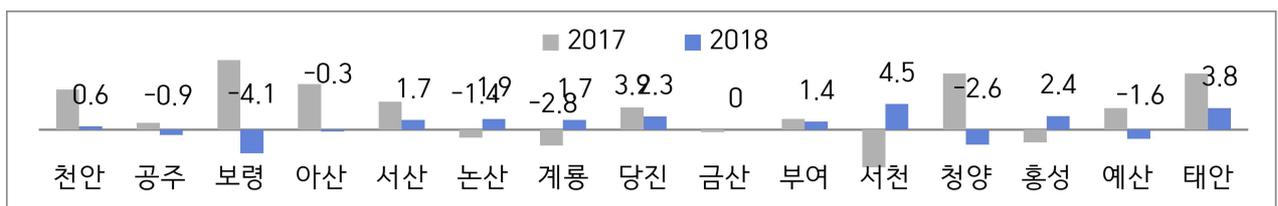
□ 시군별 경제성장률은 큰 변동폭을 나타냄(최저 -4.1%~최고 4.5%)

- 성장(+성장, 10개) : 서천군(4.5%), 태안군(3.8%), 홍성군(2.4%)
- 부진(-성장, 5개) : 보령시(-4.1%), 청양군(-2.6%), 예산군(-1.6%)

< 시군별 경제성장률 및 전년대비 증감률(그림) >

(단위: 10억원, %, %p)

구분	지역내총생산(실질)			경제성장률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충청남도	110,165.7	110,873.2	707.5	5.4	0.6	-4.8
천안시	24,867.4	25,018.6	151.2	7.0	0.6	-6.4
공주시	3,398.7	3,367.9	-30.8	1.2	-0.9	-2.1
보령시	4,386.4	4,206.4	-180.0	12.2	-4.1	-16.3
아산시	28,277.5	28,195.5	-82.0	8.0	-0.3	-8.3
서산시	16,755.9	17,039.7	283.8	4.9	1.7	-3.2
논산시	3,505.9	3,574.1	68.2	-1.4	1.9	3.3
계룡시	1,368.7	1,392.0	23.3	-2.8	1.7	4.5
당진시	11,456.7	11,723.1	266.4	3.9	2.3	-1.6
금산군	2,121.5	2,122.2	0.7	-0.4	0.0	0.4
부여군	1,872.2	1,899.2	27.0	1.9	1.4	-0.5
서천군	1,887.9	1,971.9	84.0	-6.6	4.5	11.1
청양군	1,178.5	1,147.6	-30.9	9.8	-2.6	-12.4
홍성군	3,009.7	3,080.9	71.2	-2.2	2.4	4.6
예산군	2,981.7	2,934.2	-47.5	3.8	-1.6	-5.4
태안군	3,110.0	3,226.6	116.6	9.8	3.8	-6.0



□ (북부권) 2017년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반면, 2018년에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세 약화

< 시군별 경제부문별 성장률(%) >

구분	2017	2018	증감	성장 산업	부진 산업
천안시	7.0	0.6	-6.4	제조업(3.5), 문화기타서비스업(15.2)	전기가스업(-28.0), 건설업(-25.3)
아산시	8.0	-0.3	-8.3	제조업(1.1), 교육서비스업(7.4)	건설업(-24.9), 농림어업(-20.9)
서산시	4.9	1.7	-3.2	제조업(2.4), 공공행정(6.0)	전기가스업(-30.8), 농림어업(-9.7)
당진시	3.9	2.3	-1.6	제조업(1.2), 건설업(10.4)	정보통신업(-1.3), 문화기타서비스업(-2.6)

□ (북부권 이외)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성장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군별 산업이슈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화함
 - 특히,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은 지난해 급격한 경제성장(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률 변화가 크게 나타남(전년 대비 증감 ±10%p)

< 시군별 경제부문별 성장률(%) >

구분	2017	2018	증감	성장 산업	부진 산업
공주시	1.2	-0.9	-2.1	금융보험업(10.9) 사업서비스업(7.7)	제조업(-1.4), 건설업(-9.7)
보령시	12.2	-4.1	-16.3	금융보험업(7.6), 공공행정(7.3)	전기가스업(-13.7), 광업(-14.3)
논산시	-1.4	1.9	3.3	사업서비스업(11.2), 보건사회복지업(6.4)	건설업(-14.1), 문화기타서비스업(-9.7)
계룡시	-2.8	1.7	4.5	건설업(36.5), 공공행정(1.8)	문화기타서비스업(-34.4), 농림어업(-23.1)
금산군	-0.4	0.0	0.4	제조업(3.9), 보건사회복지업(6.4)	문화기타서비스업(-7.7), 전기가스업(-26.2)
부여군	1.9	1.4	-0.5	제조업(11.6), 보건사회복지업(7.9)	운수창고업(-13.6) 건설업(-10.3)
서천군	-6.6	4.5	11.1	건설업(42.7), 보건사회복지업(7.6)	전기가스업(-86.7), 농림어업(-0.2)
청양군	9.8	-2.6	-12.4	농림어업(17.5) 운수창고업(6.0)	제조업(-16.9), 사업서비스업(-6.3)
홍성군	-2.2	2.4	4.6	정보통신업(17.0), 제조업(10.3)	사업서비스업(-18.9), 건설업(-6.1)
예산군	3.8	-1.6	-5.4	보건사회복지업(7.1), 금융보험업(7.7)	운수창고업(-14.6), 건설업(-26.3)
태안군	9.8	3.8	-6.0	공공행정(14.8), 운수창고업(10.5)	광업(-28.3), 건설업(-21.5)

③ 산업구조

□ 시군별 산업구조 : 시 단위에서는 광·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군 단위에서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이 산업구조 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

□ 산업의 시군별 비중

- (농림어업) 논산시(10.6%), 당진시(10.2%), 부여군(10.6%) 순
- (광제조업) 아산시(40.7%), 천안시(22.1%), 서산시(16.5%) 순
- (전기가스업) 보령시(26.3%), 당진시(37.4%), 태안군(28.4%) 순
- (건설업) 천안시(23.2%), 아산시(18.8%), 서산시(16.5%) 순
- (서비스업) 천안시(29.0%), 아산시(12.3%), 서산시(8.1%) 순

< 시군별 산업구조 및 산업의 시군별 비중 >

(단위: %)

구분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산업구조)					경제활동별 시군 비중				
	농림어업	광제조업	전기가스 중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제조업	전기가스 중기업	건설업	서비스업
충청남도	4.0	54.3	3.5	5.7	32.5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안시	1.2	52.0	0.3	5.8	40.8	6.9	22.1	1.7	29.0	29.0
공주시	7.0	28.5	0.2	6.9	57.5	5.7	1.7	0.1	5.7	5.7
보령시	7.3	12.7	27.2	12.1	40.7	6.2	0.8	26.3	4.2	4.2
아산시	0.8	80.5	0.3	3.9	14.5	5.6	40.7	2.2	12.3	12.3
서산시	2.9	69.0	0.7	7.3	20.2	9.4	16.5	2.7	8.1	8.1
논산시	12.4	25.2	0.2	4.0	58.1	10.6	1.6	0.2	6.0	6.0
계룡시	0.3	4.9	0.2	2.2	92.4	0.1	0.1	0.1	4.1	4.1
당진시	4.0	52.4	12.9	6.6	24.1	10.2	9.8	37.4	7.5	7.5
금산군	5.4	49.6	0.4	3.7	40.9	2.5	1.7	0.2	2.3	2.3
부여군	23.7	20.2	0.1	6.5	49.4	10.6	0.7	0.1	2.7	2.7
서천군	10.8	29.6	0.3	7.4	51.9	5.1	1.0	0.2	3.0	3.0
청양군	17.8	28.7	0.1	5.6	47.9	4.6	0.5	0.0	1.5	1.5
홍성군	10.4	13.9	0.1	4.9	70.6	7.8	0.8	0.1	6.4	6.4
예산군	12.0	35.8	0.3	7.2	44.8	8.8	1.9	0.2	4.0	4.0
태안군	9.6	2.3	40.0	6.9	41.1	6.0	0.1	28.4	3.1	3.1

* 서비스업 및 기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기타서비스업

4 1인당 지역내총생산

□ 1인당 총생산은 서산시(99.9백만원)가 가장 컸고 부여군(28.5백만원)이 가장 적음

○ 상위 : 서산시(99,970천원), 아산시(94,204천원), 당진시(67,441천원)

○ 하위 : 부여군(28,578천원), 논산시(30,519천원), 홍성군(31,438천원)

<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

(단위: 천원, 충남=100)

구분	추계인구	1인당 GRDP*	상대수준**
충청남도	2,179,663	53,006	100.0
천안시	656,707	39,843	75.2
공주시	110,866	32,726	61.7
보령시	105,231	37,072	69.9
아산시	320,778	94,204	177.7
서산시	177,988	99,970	188.6
논산시	124,202	30,519	57.6
계룡시	45,173	33,962	64.1
당진시	172,458	67,441	127.2
금산군	54,919	39,627	74.8
부여군	70,275	28,578	53.9
서천군	55,881	37,463	70.7
청양군	33,468	35,600	67.2
홍성군	104,028	31,438	59.3
예산군	82,347	39,519	74.6
태안군	65,344	44,046	83.1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 ÷ 추계인구로, 추계인구는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17년 기준)에 충남 시군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작성

** 상대수준 = (시군별 1인당 지표 ÷ 충남 1인당 지표) × 100

붙임 1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명목)

(단위: 10억원, %)

지역	지역내총생산(명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충청남도	101,299	106,869	115,558	115,534	100.0	100.0	100.0	100.0
천안시	22,349	23,705	26,009	26,165	22.1	22.2	22.5	22.6
공주시	3,197	3,480	3,613	3,628	3.2	3.3	3.1	3.1
보령시	4,140	4,109	4,249	3,901	4.1	3.8	3.7	3.4
아산시	23,657	26,324	30,789	30,219	23.4	24.6	26.6	26.2
서산시	15,510	16,370	17,638	17,793	15.3	15.3	15.3	15.4
논산시	3,540	3,664	3,662	3,790	3.5	3.4	3.2	3.3
계룡시	1,352	1,458	1,467	1,534	1.3	1.4	1.3	1.3
당진시	11,675	11,358	11,479	11,631	11.5	10.6	9.9	10.1
금산군	2,261	2,182	2,159	2,176	2.2	2.0	1.9	1.9
부여군	1,827	1,885	1,948	2,008	1.8	1.8	1.7	1.7
서천군	1,990	2,076	1,961	2,093	2.0	1.9	1.7	1.8
청양군	1,079	1,102	1,221	1,191	1.1	1.0	1.1	1.0
홍성군	3,070	3,171	3,195	3,270	3.0	3.0	2.8	2.8
예산군	2,675	3,015	3,230	3,254	2.6	2.8	2.8	2.8
태안군	2,979	2,970	2,937	2,878	2.9	2.8	2.5	2.5

붙임 2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실질)

(단위: 10억원, %)

지 역	지역내총생산(실질)				경제성장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충청남도	101,299	104,503	110,166	110,873	1.1	3.2	5.4	0.6
천안시	22,349	23,240	24,867	25,019	-	4.0	7.0	0.6
공주시	3,197	3,359	3,399	3,368	-	5.1	1.2	-0.9
보령시	4,140	3,911	4,386	4,206	-	-5.5	12.2	-4.1
아산시	23,657	26,193	28,277	28,195	-	10.7	8.0	-0.3
서산시	15,510	15,970	16,756	17,040	-	3.0	4.9	1.7
논산시	3,540	3,556	3,506	3,574	-	0.5	-1.4	1.9
계룡시	1,352	1,408	1,369	1,392	-	4.1	-2.8	1.7
당진시	11,675	11,024	11,457	11,723	-	-5.6	3.9	2.3
금산군	2,261	2,129	2,122	2,122	-	-5.8	-0.4	0.0
부여군	1,827	1,838	1,872	1,899	-	0.6	1.9	1.4
서천군	1,990	2,022	1,888	1,972	-	1.6	-6.6	4.5
청양군	1,079	1,073	1,179	1,148	-	-0.5	9.8	-2.6
홍성군	3,070	3,076	3,010	3,081	-	0.2	-2.2	2.4
예산군	2,675	2,873	2,982	2,934	-	7.4	3.8	-1.6
태안군	2,979	2,831	3,110	3,227	-	-5.0	9.8	3.8

붙임 3 주요개념 및 용어해설

1. 생산의 포괄범위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되는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집계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UN 통계국의 국민계정체계(SNA)는 생산의 범위를 『본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및 부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중 교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원시적 생산물이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경제와 분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수준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점을 감안하여 SNA에서는 생산자의 생계를 위한 생산활동은 그것이 비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SNA에서는 전체 생산 및 소비의 종합적인 측정과 금융계정, 대외거래계정 등 타 계정의 추계오차를 줄이기 위해 불법생산, 은닉생산 및 지하경제도 생산에 포함시키도록 생산의 포괄범위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계정작성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기록시점

거래는 일정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 거래행위가 지속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매계약의 성립, 제품의 인도, 대금의 수령, 회계상의 처리 등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특히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을 경우 거래시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국민계정에서는 요수급발생주의원칙(要需給發生主義原則, receivable - payable basis)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대금의 수급시기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법적 양도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생산계정에서의 거래의 기록시점을 보면 산출액의 기록에서 생산된 재화는 판매되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산출액에 계상되고, 특성상 재고가 없는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기록된다.

중간소비의 기록에서 산업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실제 투입되는 시점에서 기록되고,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 기록된다.

3. 시장가격과 기초가격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거래규모의 평가가 국민경제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여타의 평가기준보다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SNA에서는 산출물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나 생산자의 의사결정 분석 등에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기초가격은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보조금)와 유통마진을 공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에서도 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기초가격 부가가치와 시장가격 부가가치를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자가소비한 생산물, 자가소유주택의 임료 등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상품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하고, 자가건설과 같이 그 품질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절한 시장가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정부서비스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4. 가격평가

산출액은 시장가격 중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SNA에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소비는 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정부서비스생산자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5.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지역내총생산에는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가격 계열과 어느 특정 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가격 계열의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소득계정을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지역소득 계열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년가격 기준에 의한 지역소득은 생산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두 시점 사이에 있어 그 수준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이용

목적은 지니고 있다. 즉, 지역경제의 구조변동이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계열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 및 구조변동을 관찰하려면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준년가격 계열을 작성하는데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생멸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별 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얻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다른 하나는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시점의 재화와 서비스가 동질의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두 시점 사이의 생산된 물량수준의 변동이 가격변동을 제거한 소득수준의 변동을 대변하게 되는데 기술진보와 신제품개발, 품질개선이 일반화된 현실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준년가격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시점 사이의 소득수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써 기준년가격 계열의 작성은 의미를 가지며 지역소득계정에서도 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계가 가능한 부문도 생산물의 흐름으로 포착한 생산소득과 지출측면에서 본 지출소득 뿐이며 분배소득이나 저축, 조세지불 및 이전지불 등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부문이다.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년으로 선택되는 해는 다음 기준년까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해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일이다. 또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당해년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기준년간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준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편작업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개편에 필요한 수많은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상 10년 혹은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는데, 보통 2010년, 2015년 처럼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5인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며 우리 나라는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고 있다.

바. 고정가중 실질GRDP와 연쇄가중 실질GRDP

지역내총생산(GR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 가격) GRDP와 실질(기준년 가격) GRDP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GR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 때 실질GRDP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하는 것이고,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어 실질 GRDP를 구하는 것이다.

실질 GRDP의 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에서는 연쇄 물량지수를 사용한다. 고정 물량지수는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변동을 직접 비교하는 데 비해 연쇄 물량지수는 연속적인 기간의 단기물량변동을 누적함으로써 떨어져 있는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한다.

즉,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질 GRDP를 먼저 구하고 성장률은 사후적으로 계산하며,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R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쇄가중법의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R)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통계자료는 2015년 기준 개편부터 연쇄가중법을 도입하여 실질 GRDP을 추계하였다.

사. 디플레이터

당해년가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기준년가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 경우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등 특정 가격지수가 될 수도 있으나, 사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각 구성항목별로는 해당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하여 실질치를 구하며, 추계결과표상의 디플레이터는 『당해년가격÷기준년가격×100』으로 산출한다.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기타 가격지수까지도 이용된다.

붙임 4 추계항목 및 추계방법

□ 추계항목

1. 산출액

산출액(Output)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화폐평가액을 말하는데 생산주체별로 산출물의 형태와 비용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산출액의 정의도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산출액은 일정기간중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것이 실제 판매되었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산출액에 계상된다.

그러나 재화생산의 경우엔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액을 구할 수 있지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장기간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은 기성액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도소매업의 경우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을 산출액으로 계상하며, 운수 및 창고업은 운수 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을 산출액으로 처리한다. 서비스업은 요금·수수료 등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금융업의 경우엔 송금, 추심, 환전 등에 따른 실제서비스 수수료와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를 통하여 암묵적으로 수취하는 금융중개서비스를 산출액으로 보며, 보험업의 경우엔 수취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보험금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산출액으로 본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에 투입된 총투입비용을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서비스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산출액으로 본다.

2.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내용년수 1년 이하의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정부가 구입하는 군사장비는 2008SNA 권고에 따라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분은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회계기간중에 소진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남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에 계상되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된다.

3.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이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와 생산보조금(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고정자본소모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자본재의 감소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제도부문에 분배된다.

가)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분담금을 포함한다. 현금급여는 피용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취한 금액외에 원천과세액도 포함하며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용자분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된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도 고용주가 서비스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물급여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주로 피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피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고용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련,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고 생산과정의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그밖에 피용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한다.

나)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자본에 대한 대가이며 부가가치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생산세 - 생산보조금)를 뺀 잔액과 같다. 이 영업잉여는 생산주체의 투입구조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부가가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의 경우에는 시장성격을 지닌 일부 특별회계(우편사업, 우체국 예금/보험, 상수도 등)를 제외하고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모든 유형자산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예상수명을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즉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및 기술

의 발전 등에 따라 노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소모된 고정자본의 가치만큼 부가가치 중에서 분리하여 비축해 두는데, 그 부분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라) 생산세(생산보조금 공제)

생산세는 93SNA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서 세율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왜곡방지와 순수한 생산자 몫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과 같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생산비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말한다.

한편 생산보조금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 지급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로서는 정부의 탄가안정대책에 대한 적자보전과 여객선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서도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나 수해·화재 등에 따른 자본재의 손실보전을 위한 부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전 거래로 분류한다.

□ 추계방법

1. 개요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변화, 산업의 성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1년 동안의 생산측면을 측정하여 계량화하였으며, 이를 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명목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사정에 따라 생산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하거나, 매출액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거나 산출액에 특별조사 또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실질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및 업종성격에 따라 당해년 물량에 기준년단가를 곱하거나 당해년도 가격 산출액을 관련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또한, 실질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각 경제활동부문별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제활동부문별 추계방법

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은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작물재배업과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 증식하는 축산업, 그리고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하는 임업,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당해년 가격>

가) 농 업

농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으로 나누어 추계하는데, 작물재배업에는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특용작물 등의 생산활동이 포함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산출액은 품목별로 시군의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과 별도로 수집한 시군단위 가격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중간소비는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농경비 및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 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구한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축산업도 작물재배업과 같이 산출액은 품목별로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축산업 전체의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가축의 산출액은 가축통계와 도살통계를 이용하여 시군의 생산 두수를 구하고, 여기에 시군별 해당품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양잠, 양봉, 우유 및 달걀 등의 산출액은 농림통계연보 등으로부터 구한 시군별 생산량에 시군별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구한다. 중간소비는 사료비, 수의비, 부화비, 초지조성비, 기타비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투입량에 시군별 농가구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임 업

임업의 산출액은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시군별 임업의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 어 업

어업의 산출액은 어업생산통계의 시군별 생산액을 계상한다. 시군별 부가가치는 어가경제통계나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산출액에 곱하여 추계한다.

라)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농림어업관련서비스의 농경서비스, 수리관개서비스 등 산출액은 작물재배업의 중간소비

로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고, 농수축협외의 지도서비스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구하며, 축산, 임업관련서비스업 등의 산출액은 외형거래액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나 관련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기준년 가격>

가) 농 업

농업의 시군별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주로 시군별·품목별 생산량 및 중간소비량에 기준년 가격을 곱하여 추계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하는데, 생산량과 이에 대응되는 기준년 가격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부문은 당해년도 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가격지수로 환가하거나 실질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나)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의 시군별 실질 산출액은 품목별 생산량에 해당 기준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다)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명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2) 광 업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 및 품질개선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 채굴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피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 및 손질, 품질개선활동을 포괄한다.

<당해년 가격>

이 부문은 중분류별 혹은 하위부문별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통계 등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구하여 산출액으로 한다.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의 광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구한다.

<기준년 가격>

광업의 실질 산출액은 중분류별 혹은 하위부문별로 시군별 명목 산출액을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중간소비는 실질 산출액과 마찬가지로 명목 중간소비를 관

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실질화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3) 제조업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형태로 판매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포장 또는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당해년 가격>

명목 산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여기에 해외 가공 및 중계무역의 추가 반영을 위해 통관 수출입자료와 국제수지자료를 이용한다.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의 제조업 중분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구한다.

<기준년 가격>

제조업의 실질 산출액은 산업 소분류별로 시군별 명목 산출액을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과 마찬가지로 명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실질화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업은 주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활동이고, 가스업은 가스의 제조, 제조된 가스·천연가스 등을 일반 사용자에게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냉난방·동력 목적의 열·증기·냉온수 등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당해년 가격>

전기업의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전기업의 산출액은 해당기관의 손익계산서로부터 추출한 전기 판매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며, 지역단위 추계를 위해 시군별 전기 판매량을 이용한다.

가스업(열공급업 포함)의 산출액은 관련기관의 가스 매출액과 부대사업수익의 합에 열매출 수익을 합하여 시군별 산출액을 계상하며, 지역단위 추계를 위해 시군별 가스공급량 및 열판매량 등을 이용한다. 또한 가스업의 중간소비는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비용항목을 추출하여 계상한다.

<기준년 가격>

실질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물가지수, 투입구조별 환가지수 등 관련 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한다.

5) 건설업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설업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 즉 경미한 공사나 자기공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주로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지만,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도 포함된다.

건설업의 추계는 주거용 건물건축, 비주거용 건물건축, 건축보수, 토목공사, 산업설비, 조경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산출액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의 완료시점에서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하지만, 건설업의 산출액은 건설활동의 결과 생산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의 시장가격 산출이 곤란하므로 기성액을 시장가격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기초가격 산출액은 시장가격 산출액에서 생산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가격 산출액으로 추계한다.

<당해년 가격>

주거용 건물건축, 비주거용 건물건축, 토목공사, 산업설비, 조경부문의 산출액은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의 공사종류 및 공사지역별 기성액과 건설비용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건축보수는 주택보수와 비주택보수로 구분하며, 주택보수는 가구당 주택보수비에 가구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비주택보수는 주택보수비 및 지방세통계연감의 건물 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각 부문별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는 이중환가법으로 추계한다.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건설업조사보고서,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의 임금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문별지수로 명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환가하여 추계한다.

6)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활동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당해년 가격>

도소매업의 산출액은 재화가 생산자를 떠나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추가 비용인 상업마진(trade margin)으로 구성되며,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도소매업의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해당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7) 운수 및 창고업

운수 및 창고업은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각종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 및 화물의 운송활동과 화물의 보관 및 이에 수반된 운수보조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당해년 가격>

운수 및 창고업의 산출액은 경제총조사, 운수업조사, 해당기관의 결산서,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준년 가격>

운수 및 창고업의 실질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물가지수 등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프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음식점업은 식당, 주점,

다방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음식·음료 등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한 조제 음식물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당해년 가격>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산출액은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자료로부터 구한 숙박업, 음식점업의 매출액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해당 관련 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9) 정보통신업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및 이를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당해년 가격>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부문의 산출액은 서비스업조사 자료 및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소프트웨어 제작, 방송업, 통신업 등은 ICT실태조사의 연도별, 소재지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액을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조사 및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우편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공비영리기관 결산서자료에서 관련 항목을 추출하여 산출액과 중간소비를 구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준년 가격>

정보통신업의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및 명목 중간소비를 해당 물가지수 등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

업과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보험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도 포함되며, 이들의 부가가치 추계는 기본적으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당해년 가격>

금융업의 산출액 추계는 각 기관 결산자료상의 수입수수료, 보증료 등 실제서비스료와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금융중개서비스인 FISIM(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을 합산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전기수도료 등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제비용을 추출하여 추계한다. 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경상경비 지출액을 산출액으로 추계한다.

보험업의 산출액은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료 수입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책임준비금 순증액을 차감한 귀속보험료에 수수료 수입 등 투자수익액을 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결산서상의 중간소비 항목인 관리비,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구한다.

<기준년 가격>

금융 및 보험업의 실질 산출액은 자금순환의 이자부 자산 및 이자부 부채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실질 이자부자산 및 이자부 부채의 증가율로 기준년도 예금 FISIM과 대출 FISIM을 연장하여 계산한 실질 금융중개서비스와 당해년 실제서비스료를 각각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산출한 실질 실제서비스를 합하여 추계한다. 실질 중간소비는 명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산출액에서 실질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1) 부동산업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되며,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귀속임료도 포함시킨다.

<당해년 가격>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의 산출액은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 및 관련 기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또한 주거서비스 부문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주택에 대한 귀속임료와 임대주택에 대한 실제임료를 합하여 추계한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부동산업의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명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2) 사업서비스업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임대업은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당해년 가격>

사업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의 산출액은 서비스업조사 및 관련 기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연구개발업은 연구개발활동조사 등의 자료에서 관련 항목을 추출하여 부가가치와 중간소비 항목을 추계하고, 이를 더해 산출액을 구한다.

<기준년 가격>

사업서비스업의 실질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명목 산출액, 명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을 기초자료로 추계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경제활동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로 분류한 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을 제외한 산업분류는 타 산업 부문에서 추계한다.

또한, 사회보장기관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에 분류하여 추계하고, 군사장비에 대한 지출은 2008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당해년 가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출결산서,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서 등을 이용하여 이전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피용자보수, 중간소비 등의 산출액 구성항목을 추계한다. 이때 피용자보수에는 공무원의료보험 및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더해서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공공행정 및 국방의 실질 산출액은 실질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합하여 구하는데 실질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는 각각 명목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임금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14)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직업훈련학원 등 기타교육기관 등이 해당된다.

<당해년 가격>

공립 초·중·고는 교육비특별회계(도서관 운영 관련 제외)와 학교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전문대학과 국립대학·대학원은 정부결산의 일반회계 및 대학회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사립교육기관은 교육통계연감, 학교회계 및 학교법인 결산자료, 사립전문대학 및 대학 결산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수집)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기타교육부문의 산출액은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 결과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관련 기초자료의 부가가치항목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실질 산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을 이용하여 명목 산출액을 환가하여 추계하고, 실질 중간소비는 명목 중간소비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만든 중간투입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작성한다.

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은 각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고 사회복지업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수용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비수용복지시설을 포괄하여 추계한다.

<당해년 가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출결산서,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 전국사업체조사 및 보건복지통계연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구분별 진료실적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추계한다.

<기준년 가격>

실질 산출액은 명목 산출액을 보건복지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또한 실질 중간소비는 명목 중간소비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만든 중간투입 물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작성한다.

16)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기타서비스업은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계한다.

<당해년 가격>

산출액은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 정부결산서 및 해당기관의 결산서,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소비는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수도업부문의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공기업결산서 자료의 해당항목을 추출하여 시군별로 계상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기준년 가격>

실질 산출액은 명목 산출액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작성한 산출액 환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하고, 실질 중간소비는 명목 중간소비를 중간투입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